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안내

〈산림연접지의 소각,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닌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13년 봄철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45%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 소각행위 근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이장님으로부터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다고 마을 대표로 서약을 받아 자발적인 참여·실천을 통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행과정 및 결과가 실제 산불발생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인센티브도 제공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 접수대상 : 읍·면에 소재한 행정리의 이장

※ 읍·면은 없으나 광역시 등의 도농복합형 '동'인 경우에는 통장 명의로 접수 가능

○ 서약접수 : 읍·면 및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산림청 보호팀  
(별지 서식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도의 마을별 접수현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접수마감 : 2014년 3월 9일까지 / 우편의 경우 도착일 기준

○ 실천기간 : 서약서가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8일까지

○ 서약내용

- 논·밭두렁 소각 않기 :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가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않기 : 서약기간 중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 □ 마을단위 포상 기준 및 절차

- 대상 : 서약을 지킨 마을 중 100개 마을
- 기준 : 같은 해 6월 8일까지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가 없고, 제반여건 상 소각산불 방지에 큰 기여를 했을 경우
  - ※ 소각산불 예방 기여도에 따른 포상이며, 서약서를 접수하고 불법소각이 없거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없다고 무조건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님
- 포상규모 : 마을에 인증패 및 전통시장 상품권 100만원 수여
  - 100개 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상위 34개 마을 이장은 별도로 청장 상장 수여
- 포상 대상 마을 선정 시 고려사항
  1. 최근 2년간 마을의 소각 관련 산불발생 건수
  2. 읍·면 등 관공서 주관 산불방지 활동의 마을단위 협조도
  3. 산림면적, 마을 공동의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실제 활동내용 등
  - ※ 포상규모 등은 소각산불 예방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감될 수 있음

## □ 참고사항

- 각 관서에서는 기한 내에 서약서가 원활히 접수될 수 있도록 읍·면에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파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읍·면, 시·군·구에 접수된 서약서는 시·도 산림부서에서,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청에 접수된 서약서는 지방청에서 취합하고,
  - 총괄기관에서는 산림청으로 마을목록을 3월 20일까지 송부(서식 별도통보)
- 제도 관련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김동관(☎ 042-481-4256)

붙임1. 서약서 1부.

붙임2. 소각산불 실천 동참 리플렛 1부. 끝.

접수번호

기관명-2014-02XX-○○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한

# 서 약 서

마을 대표자

이름: ○ ○ ○(○○세) / 연락처 000-0000-0000

마을 현황

주소:

가구 수: 000가구 000여명 거주

상기 마을은 이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마을대표

(서명)

서약기간

'14.      .      ~ '14. 6. 8

서약마을  
준수사항

- ① **논·밭두렁 소각 않기** :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 ②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않기** : 서약기간 중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기타 참고사항

지역 산림관서로부터 불놓기 허가를 받거나 공동소각을 하는 등 합법적인 소각은 허용되며,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3.10~4.20)에는 어떠한 소각도 할 수 없음

○○○장 귀하

## 소각산불 예방, 실천으로 동참해주세요!

**봄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 ‘봄 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110여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의 약 30%)
  - 매년 소각산불로 60여명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실수로 낸 산불, 패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